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1074호 2019. 6 1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32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533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삼척시 공고 제536호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 29
- 삼척시 공고 제54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32
- 삼척시 공고 제54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33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541 외 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 고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32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541 | 20190614 | | 20090807 | 자연지형명칭 반영(건의령) |
| 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568-2, 565-5, 567-1, 568-1, 568-3, 631-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 20190614 | 건물신축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르기존도로명활용 |
| 3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160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01 | 20190614 | 건물신축 | 20090626 | 중점부행정구역명사용 (노곡면주지리)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순번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 고시일 | 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 개 | 계 | 3건 | 3건 | | | | | |
| 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32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54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54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541 | 20190614 | | 20090807 | 자연지형명칭 반영(건의령) | |
| 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568-2, 565-5, 567-1, 568-1, 568-3, 631-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 | 20190614 | 건물신축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르기존도로명활용 | 근덕정소면 문화의 집 |
| 3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160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01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01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01 | 20190614 | 건물신축 | 20090626 | 중점부행정구역명사용(노곡면주지리) | |

삼척시 공고 제2019 - 532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삼척시장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SNS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독려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시정 이해와 시민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의 조례 반영(안 제2조제2호, 안 제12조제3항)
- 나. SNS 서포터즈 활동지원(보상)관련 개정(안 제10조)
 -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에서 면제로 혜택 확대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12. ~ 2019. 7. 0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07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 전 화: (033) 570-3221 ■ FAX: (033) 570-3132

5. 참고사항

- 가. 붙임문서
 -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검토의견서 1부.
- 나.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사·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유료시설의 요금감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삼척 SNS 서포터즈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관광 유료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3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생략)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삭제>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개정안 | 검토의견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삼척시 공고 제2019-533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식 있는 삶을 통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신설(안 제23조)

1) 경조사휴가 일수 조정

- 배우자 출산 : 5일 → 1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 1일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2)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 내

3) 가족돌봄휴가 신설 : 연간 3일 범위 내

- 대상가족 :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

4) 자녀입영휴가 신설 : 1일(자녀입영일)

5) 법정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휴가 신설 : 1일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 삭제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 전 화 : (033) 570-3241 ■ FAX: (033) 570-313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삼척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을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상”을 “사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획득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직무 수행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시간외의”를 “근무시간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련의 경우에는”을 “훈련을 할 경우에”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 복무에 관하여”를 “공무원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를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게”를 “기관에서”로,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을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받은”을 “중인”으로, “파견근무자”를 “파견 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의 근무)”를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소속기관의 장은”을 “해직된 공무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근무시간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휴가”를 “제2장 휴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의”를 “공무 외의”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1일”을 “매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5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제18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을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시장은 공무원”으로,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가”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우리시”를 “시”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로 하여”를 “피로하여”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 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하여 피해”를 “피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 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6조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5 |
|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산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복무선서) ①삼척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삼척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 -----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 ②----- 따 른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책임완수) ----- -----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 |
|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위 및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의2(비밀엄수) ----- ----- 사람은 다음 ----- --. <단서 삭제> |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1. --- 따라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3. ---- 사상-----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친절·공정) ①----- ----- 존중하 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 |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입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②----- 획득하기 위해 -----

③ ----- 직무 수행 시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근무시간 외에 -----

②----- 훈련을 할 경우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겸임근무) ①-----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 공무원의 복무는 -----
-----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 -----

②----- 공무원이 -----

제10조(파견근무) ①----- 기관에서 -----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중인 -----

②----- 공무원이 ----- 중인 ----- 파견 근무자 -----

③----- 복무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

----- 해직된 공무원이 -----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2장 근무시간 등

제3장 휴가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 3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삭 제>

제2장 휴가

<삭 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7조제1항-----
- 공무원에게-----
-----.
- 공무 외의-----
-----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했-----
-----.

⑤---- 영 제7조제1항-----
----- 지
급하는 것으로-----.

<삭 제>

<삭 제>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

<삭 제>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친제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정상적인 탄기출산과 임신기간 발생한 유산·조산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별표3에 따라 -----
 -----.

<삭 제>

· 사산한 경우 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임신 4월 미만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③ -----
----- 매월 1일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 따라 ----- 영 제 7조제1항 -----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해서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시가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우리의 명예를 선양한 때
-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생략)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1. ~ 3. (생략)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⑩ (생략)

<신설>

⑥ 시장은 공무원 -----

----- 경우 -----

-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
----- 시 -----
----- 경우 -----
- 2. -----

----- 피로하여 -----
----- 경우 -----
- 3. (현행과 같음)

⑦ -----
----- 공무원에게 -----

----- 영 제7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⑧ ----- 피해 -----

⑨·⑩ (현행과 같음)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단, 시

| | |
|---|--|
| <신 설> | 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신 설> | ⑫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⑬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 <삭 제> |
|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삭 제> |
|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 <삭 제> |

| | |
|--|-------|
| <p>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삼척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삼척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중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p>제5장 정치운동</p> <p>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3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p>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 <삭 제> |
|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3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 제>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삭 제> |

삼척시 공고 제2019-536호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의거 『2019~202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9.6.25.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3) 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삼척시장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 신청내용 | | | | 승인여부 | | 승인조건 및 불승인 사유 |
|-------|--------|----------|------|-----------|-----------|--|
| 어업별 | 위치(지선) | 면적(전/ha) | 개발사유 | 승인(전/ha) | 불승인(전/ha) | |
| 정치망 | 대진리 지선 | 10.0ha | 대체개발 | 1건/10.0ha | - | ■ 기존 정치망어업(제18-1호, 10ha)을 동일 면적 내 사각형태에서 “T”자 형태로 변경, 다른 어업과의 분쟁요인 해소 후 개발 |
| 정치망 | 초곡리 지선 | 4.0ha | 대체개발 | 1건/4.0ha | - | ■ 기존 정치망어업(제14-4호, 4ha)을 동일 면적 내 사각형태에서 “T”자 형태로 변경, 다른 어업과의 분쟁요인 해소 후 개발 |
| 해조류양식 | 용화리 지선 | 1.5ha | 재개발 | 1건/1.5ha | - |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
| 어류등양식 | 용화리 지선 | 0.7ha | 재개발 | 1건/0.7ha | - |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
| 복합양식 | 초곡리 지선 | 3.0ha | 재개발 | 1건/3.0ha | - |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1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 국적 | |
| | 주소 | |

| | | |
|-------------------|----|------|
| 배우자 및 직계 비속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개발계획 내용 | 어업의 종류 | 양식방법 |
| |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 |
| | 수면의 번호 | 수면의 면적 및 수심 |
| | 제 호 | 면적: ha 수심: m |
| 수면의 위치 | |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1,000원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삼척시 공고 제2019-54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9.06.12. ~ 2019.06.26.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9.06.27.
4. 공고내용

| | | |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박동○ |
| | 주소 (대장상주소)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244-1 목조 (1층:44.95㎡ 주택) |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12.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